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
----------	---

제출연월일 : 2002.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승강기보수업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2002.2.4, 법률 제6652호)되어 시·도지사 권한사항으로 이양됨에 따라
- 승강기 보수업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관련 수수료 신설
 -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 1건당 50,000원
 -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신청 : 1건당 20,000원
 -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교부신청 : 1건당 20,000원

3. 근거법령 : 별첨

- 첨 부 : 1.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관계법령발췌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 나목에 (4), (5),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준	요 액
(4)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1건	50,000
(5)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신청	1건	20,000
(6)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20,000

부 칙

이 조례는 200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증명등수수료요금표 (단위: 원)			제증명등수수료요금표 (단위: 원)		
구분	기준	요금	구분	기준	요금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탁인 등 가. (생략)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탁인 등 가. (현행과 같음)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나.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신설)			(4)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1건	50,000
(5) (신설)			(5)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6) (신설)			(6) 승강기보수업 등록준 재교부 신청	1건	20,000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보수업의 등록) ①승강기보수업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제22조(수수료 등) ① (생 략)

②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